제343회 임시회 2015. 10. 21.(수)

심 사 보 고 서

○ **2016**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



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

「2016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」

심 사 보 고 서

<u>2015. 10. 21.(수)</u> 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5년 10월 2일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10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10월 14일

-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)

가. 제안사유

-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에 소재한 충북문화재연구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을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으로 반영하기 위하여
- O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O 충북문화재연구원 임대료 출연 : 40백만원

3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문화전문위원 : 한철우)

- 금번 출연계획안은 지역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·관리하는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음. 다만, 매년 지출이 예상되는 시설물 임대료를 해마다 반복적으로 출연 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"생 략"
- 5. 토 론 요 지: "생략"
- 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- 7. 소 수 의 견 요 지 : "없 음"
- 8. 기타 필요한 사항: "없 음"
-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 - O 2016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 1부

2016년도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

의 안 번 호 258

제출연월일 : 2015. 10. 2.

제 안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○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① 충북문화재연구원 임대료 출연 : 40백만원

- 문화재 전문조사·연구기관 육성 및 지원
- 문화재 관련 연구 활동 및 공익사업의 안정적 수행
- 문화재 발굴조사, 학술사업 및 연구서 발간
-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지방사 자료 정리를 위한 문헌조사
- 문화재 보존·활용사업 및 위탁사업
- 전통문화와 문화재 전문 인력 양성 및 사회교육활동

3. 제안자 의견

-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여 중요한 지정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충청 북도는 수많은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는 문화재의 보고로,
-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·관리와 사회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문화재 학술연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출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요망함

① 출연 심의요구서

	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주무관	전화
주관부서 	문화예술과 문화재팀	한필수	이영환	박미경	3835

기관명	츠처브ㄷ므히T	u여기의							
1 = 0	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								
 출자:출연대상	○ 대 표 : 이시종(이사장)								
	○ 소 재 지 :	○ 소 재 지 :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직지대로 393							
	○ 출자·출연 (계정금액	: 40,000)천원(도년	d 40,	.000천	<u> 원)</u>		
	○ 예산편성 요	2구 예정 <i>.</i>	사항					-	의:백만원)
	구 분	사업기간	2015년 예산액	2016년 요구액*			재원별		
출지·출연	문화재연구원	2016. 1	- 11 🗠 🖳		계 ———	국비	도비	시군비	기타
사 업 비	임대료 지원	~ 12월	38	40	40		40		
		바으 치조 스	J교거든 2	ᅧᆒᅄᄋᄅ	עד וכ				
출지·출연	○ 소중한 지역								
필요성	○ 모잉트 // ○ 문화재 연구					てんし	라 기	바ㅈ서	
	재단법인 충청								 a太(우o
 근거·법령	세년립년 88 비 등 지원)	ユエビ 47 .	MICI C	26 5	: N 2	l에 관한 조례 제9조(운영 			
	or so vice)								
│ 지도감독 │ ㅂ서이경	○ 지역문화유								
부서의견 (충 평)	역할 수행을 위 지원 타당함	1야여 설1	리핀 새는	'의 내일	쑀는	도 3 =	<u></u> 키인	[필요	경미노
(8 8)									
	1. 관리 감독투	. –							
2. 출자·출연기관 현황(기관연혁, 조직표, 인력현황, 수지표 첨부지료					표 등)				
	3. 출자·출연사								
	4. 산출기초 등	등 참고자							

11-10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

○ 2015년 문화재연구원 경영평가 결과

- 평가기관 : 충청북도(경영평가단)

- 평가방법 : 온라인 경영평가시스템 실적평가 및 기관인터뷰 병행

- 평가 내용 및 결과 : 공통지표(리더십/책임경영, 경영시스템)와 개별지표(사업성과)를 평가한 결과 89.95점의 "나 등급"판정으로 양호한 성적임

○ 2014년 문화재연구원 종합 감사결과

- 감사기관 : 충청북도(감사관실)

- 분야별 지적사항

=	구 분	계	세입분야	예산분야	계약분야	지 출분 야	일반시무 분 야
2	선 수	13	_	_	3	7	3

※ 행정상 조치 : 13건(시정 2, 주의 10, 개선 1), 재정상 조치 : 해당없음, 신분상 조치 : 3명(훈계 3)

- 최근(2014년도) 종합감사 결과 재정상 조치는 없음.
- 문화재연구원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충청북도 출연금 예산이 없었던 관계로, 재정사업평가 사항 없음
- 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
 - 소중한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·관리와 학술연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된 문화재연구원으로, 사회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상의 경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

③ 출연금 검토 (단위:백만원)

	001417	2015년		2016년	예산안	
	2014년 결산액	예산액(최종) (C)	기관 요구액(A)	실과 검토액(B)	증감(B-A)	전년대비 증감액 (B-C)
문화재연구원 임대료 지원		38	40	40	0	2

1 - ② 출연 기관현황

(재)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

설립근거	법 률 :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: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시행령 조 례 : (재)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							<u></u> - - - - -	전화번호 : 043-279-5400 홈페이지 : http://www.chungbuk.re.kr		
주요연혁	- 2005.11. 7 재단 설립 - 2010. 2.10 직제 및 기구기 - 2013.11.28 기구개편				기과형태			출연기관			
시시키체		계				정-	규직		비정규직		
인원현황		28명				25	5명		3명		
	직 ^찬 (직책명	'	-	명 명처리)	주요경력 (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)			부만	임 기 (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)		
	이사장(당약	면직)	(ه	00					2010. 7. 1 ~ 도지사 임기		
	비상임이사(당	당연직)	장	00	충청토	도문호	재연구원	원장	2014.11.19. ~ 2017.11.18		
	비상임이			00			구원 명예	원장	2005.12.19. ~ 2017.11.18		
	비상임이			00			교수		2006. 5.30. ~ 2017.11.18		
	비상임이		박	00			고 명예교수	-	2008.11. 8. ~ 2017.11.18		
임 원	비상임이			:00			학교교수		2011.11. 4. ~ 2017.11.18		
	비상임이			.00	충주 박물관 학예실장				2011.11. 4. ~ 2017.11.18		
	비상임이			00	이동코칭연구소 소장			-	2015. 3.11 ~ 2018. 3.10		
	비상임이	사	김	00	건국대학교 교수			2015. 3.11 ~ 2018. 3.10			
	비상임이사(당	당연직)	신	.00	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			국장	2013. 7.12 ~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임기		
	비상임감사(당	당연직)	한	.00	충청북도 문화예술과장			장	2015. 8.19 ~ 충청북도 문화예술과장 임기		
	비상임감	사	김	00	김00/	세무회기	회계사무소 회계사		2005.12.19. ~ 2017.12.19		
	1. 문화재 3	조사 , 연	구덕	및 관련지	료 발간	발간 2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업					
주요기능									체, 기업 등의 위임, 위탁시업		
	5. 전문인력								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		
자본금 (단위:백	11」 만원)			4,207		(출자・출연 단위:백만	년액 원)	3,400		
対二のはな	연도	201	2	2013	2014	الح	ㅁ 처 히.	자산	4,304		
최근3년간 예산 현황	예산액 ^{2」}	4,08	30	4,647	3,762	(ក្	무현황 만원)	부채	97		
(단위:백만원)	지자체 지원액 ³ 」	0		0	0	'14.1	2.31기준	자본 ¹ 」	4,207		
경영성과	총수익			총비용				당기순이익			
(단위:백만원) '14.12.31기준	3,002				2,943			59			

①-③ 출연 사업계획서

사 업 명	문화재연구원 임대료 지원	그ㅂ	출자	
주관부서	문화예술과	। च	출연	40백만원(도비)

□ 목적 및 필요성

- 소중한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·관리
- 문화재 연구 학술기관 역할 수행 및 전문조사기관 기반조성

□ 출자 · 출연개요

○ 사업위치 :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

○ 설립근거 :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○ 설립자산 : 2억원

○ 주요기능 : 문화유산의 보존·조사·연구 및 자료발간, 전문인력 양성 등

□ 산출기초

○ 별지첨부

【 연도별 출연 내역 】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합 계	'08년	'09년	'10년	'11년	'12년	'13년	'14년	'15년
출연금	1,200	400	300	500	0	0	0	0	0

□ 기대효과

- 충북의 지역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를 통한 도민의 문화향유권 기여
- 지속적인 문화재 연구를 통한 정체성 확립 및 지역문화 우수성 홍보

□ 출자·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○ 지역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·관리와 학술연구 전문기관으로서 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내실있는 운영 불가

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

□ 기본현황

○ 설립일 : 2005년 11월 7일

- 조 직 : 원장, 조사연구실, 총무부 정원 30명 / 현원 25명

- 이사회 : 12명[이사장(도지사), 이사 9명, 감사 2명]

□ 2015년 추진실적

○ 예산규모 : 34억원

○ 주요 내용

- 매장문화재 지표 시·발굴 조사, 학술용역 : 57건

- 학술 연구 용역 :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 등 : 4건

- 문화재 돌봄사업 : 1건(도 공모사업 유치)

○ 당면 문제 : 건설경기 불황으로 2011년 이후 세입이 감소하고 있음

- '11년 : 59억원 '12년 : 58억원 '13년 : 46억원 '14년 : 37억원 '15년 : 34억원

□ 2016년 임대료 지원 내용

○ 사업기간 : 2016년 1월 ~ 12월

○ 사 업 비 : 40,000천원

○ 면적 및 임대료: '15년 개별공시지가 기준(세부산출내역 별첨)

임대면적 (전용)	임대료	부가세	합계
1,960.04 m²	35,096천원	3,510천원	38,606천원

※ 합계: '16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 반영(당초: 38,606천원 → 40,000천원 산정)

□ 임대료 지원 근거

○ **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** 제9조(운영비 등 지원) 도지사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문화재연구원 사용료 산출내역

1. 재산개요

○ 위치 :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140-50

(단위: m²)

구분	연면적	전용면적	공용면적	대부 전용면적
계	2,805.63	2,378.39	427.24	1,960.04
지하	463.36	245.12	218.24	245.12
1층	806.55	597.55	209	179.20
2층	767.86	767.86		767.86
3층	767.86	767.86		767.86

2. 재산평가액(건물평가액 + 부지평가액)

① 건물평가액

- ② 건물대부면적: 2,240.95m²
 - ☞ 지하(463.36) + 1층(241.87) + 2층(767.86) + 3층(767.86)
 - \Rightarrow 지하 245.12 m^2 +(218.24 m^2 ×245.12 m^2 ÷245.12 m^2) = 463.36 m^2
 - ⇒ 1 층 $179.20\text{m}^2 + (209\text{m}^2 \times 179.20\text{m}^2 \div 597.55\text{m}^2) = 241.87\text{m}^2$
 - ※ 대부면적 산출방식
 - ☞ 건물전용면적+건물공용면적(공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×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÷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해당층 사용하는 총면적)
- (과 m²당 시가표준액: 342,640원
 - **☞ 961,333,951원(2015년 건물시가표준액)** ÷ 2,805.63(건물연면적)
- © 건물평가액: 767,839,108원
 - ☞ 2,240.95m²(건물대부면적) × 342,640원(m²당 시가표준액)

② 부지평가액

- ② 부지대부면적
 - ☞ 지하 265.58m², 1층 205.24m², 2층 767.86m², 3층 767.86m²

- ⇒ 지하 245.12 + (463.36 × 100/70) 463.36] × 245.12 ÷ 2,378.39 = 265.58m²
- \Rightarrow 1층 179.20 + (806.55 × 100/70) 806.55] × 179.20 ÷ 2,378.39 = 205.24 m^2
- ※ 대부면적 산출방식
 - ☞ 부지전용면적+부지공용면적{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[전체부지면적 (해당층 총연면적×100/70)-1층 총연면적]×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÷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}
- © 2015.5.30. 기준m'당 개별공시지가

= 367,600원

- 🕒 부지평가액: 234,920,293원
 - → 지하 면적(265.58) × 공시지가(367,600) × 1/3(층별 조정계수) = 32,542,402원
 1 층 면적(205.24) × 공시지가(367,600) × 1/2(층별 조정계수) = 37,723,112원
 2 층 면적(767.86) × 공시지가(367,600) × 1/3(층별 조정계수) = 94,088,445원
 - 3 층 면적(767.86) × 공시지가(367,600) × 1/4(층별 조정계수) = 70,566,334원
- ③ 재산평가액 = ① 건물평가액+ ② 부지평가액 = 1,002,759,400원

3. 사용료 산출

- ① 사용료율 : 기본 5%
- ② 감면요율 : 30%(연구기관에 대하여 30% 감면)
- ③ 연간사용료: 35,096,570원 ※ 부가세 3,509,650원
 - ☞ 재산평가액 × 대부료율 × 감면요율 = 996,240,930원 × 5% × 70%